

2021. . .

수 신: 양주시의회의장

제 목: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임: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황영희 (인) 
의원 외 7인

(찬성자 서명 별첨)

찬성자서명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날인(서명)	비고
정덕영	정덕영	
황영희	황영희	
홍성표	홍성표	
임재근	임재근	
김종길	김종길	
안순덕	안순덕	
이희창	이희창	
한미령	한미령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황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1. 7. .

발의자: 황영희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 가. 양주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 및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 나. 또한 양주시 예산 운용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도모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 목적(안 제1조)
-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다. 사례 공개대상과 공개 방법(안 제3조 ~ 제4조)
- 라.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 등의 심사(안 제5조~ 제6조)
- 마. 포상 및 성과금 지급(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양주시 포상 조례」 등
- 나. 입법예고: 2021. 7. 29. ~ 8. 5. (7일간)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이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신고 및 제안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센터에 신고 등을 접수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및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신고센터에 신고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⑤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 등의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및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양주시의회
입안자	황영희 의원(대표발의)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 ·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 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참고2**전국 조례안 제정 현황**

광역지자체	조례건수	비 고
경기도	12	성남시, 동두천시, 여주시, 광명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광주시, 안산시, 고양시, 군포시, 안양시
서울특별시	13	
충청도	17	
전라도	14	
경상도	10	
강원도	4	
광역시	11	부산(4), 인천(2), 광주(2), 대구(2), 대전(1)
기타	2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합 계	83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243개) 중 34% 제정